

계룡시조례 제 호

계룡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게시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글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5.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8. “전자우편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E-Mail(Electronic mail)을 말하며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계룡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 등록 안내를 준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거나, 해당 게시판의 성격에 부적합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이 판명되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자신의 의견제시 없이 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11.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시민입력사항 처리

제12조(처리기준) 시민입력사항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력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다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민입력사항(이하 "공개입력사항"이라 한다)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력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해당 입력창구를 통하여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람 처리한다.

② 입력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다른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입력사항(이하 "비공개입력사항"이라 한다)중 성명, 주소가 입력된 사항은 민원사항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사항이 아닐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비공개입력사항 중 주소가 입력되지 아니하고 전자우편주소 등이 입력된 사항은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우편으로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람처리한다.

④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답변필요여부의 판단은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홈페이지 이용관련 사항에 한해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운영자가 한다.

제13조(입력사항 관리) ① 시민입력사항에 대하여 입력자 외에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첨삭할 수 없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입력사항의 내용이 불건전하거나 해당란의 성격에 부적합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5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4조(열린시장실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며,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열린시장실은 공개 및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 게시자는 실명(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화방에서는 게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게시자의 이름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실명확인 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가명으로 접수된 의견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우편주소 보급

제16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8조(전자우편 관리) ① 전자우편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관리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우편은 전자우편관리시스템에서 1개월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운영여건에 따라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전자우편 삭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전자우편을 삭제 조치할 수 있다.

1. 발급된 전자우편주소를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발급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20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21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2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